

부산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가단3321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승, 강성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록

변론 종결 2024. 6. 21.

판결 선고 2024. 7. 26.

주 문

1. B와 피고 사이에 구미시 C 임야 4628m² 중 피고의 1/2지분에 관하여 2021. 5.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1. 5. 27. 접수 제315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3. 8. 26.부터 2019. 6. 18.까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B와 D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1	27,200,000	2013. 8. 26.	2021. 8. 19.	E은행 광복동지점	2013. 8. 26.	34,000,000
2	76,500,000	2019. 3. 28.	2022. 3. 25.	F은행 문현동지점	2019. 4. 1.	90,000,000
3	20,800,000	2019. 6. 18.	2021. 6. 17.	F은행 문현동지점	2019. 6. 18.	26,000,000

2) B와 D이 2021. 6. 21. 위 각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B와 D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미수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 123,975,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1).

1	2021. 11. 17.	22,000,000	893,040	22,893,040
2	2021. 10. 13.	76,500,000	1,578,770	78,078,770
3	2021. 10. 13.	20,800,000	468,312	21,268,312
합계	119,300,000	2,940,122	122,240,122	

3) 원고는 B로부터 40,729,813원을 회수하였고, 이로써 B는 원고에게 84,593,669원 및 그 중 81,510,309원에 대하여 2021. 10.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B와 피고 사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

1) 구미시 C 임야 4628m²은 원래 주식회사 G 소유이었는데, 2014. 12. 31. 주식회사 G와 B, H 사이의 2014. 12.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1/2지분씩 B,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이하 위 부동산 중 B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 B는 2021. 5. 24.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21. 5. 27.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는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 한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한 2021. 6. 21. B의 사해행위를 알았고, 늦어도 원고가 B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I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4813,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2022. 6. 22. B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어머니 J가 주식회사 G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주식회사 G, J, 피고 사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서 그에 따라 피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매매는 J가 B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차 피고에게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으로 B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또는 J는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선의이다.

나.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위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 시로부터 1년 이전인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한 2021. 6. 21., 늦어도 원고가 관련소송을 제기한 2022. 6. 22.에 B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2021. 6. 21.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다.

○ 원고가 2022. 6. 22. B가 I에게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L호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그러나 한편 원고가 관련소송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2022. 8. 16. 제출한 과제자료를 통하여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즉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에 관하여, B가 2022. 5. 12. J에게 자신의 아들 계좌로 보내주면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카톡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어머니 J가 주식회사 G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주식회사 G, J,

피고 사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서 그에 따라 피고가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가 선의인지 여부

이 사건 매매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던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김현석

1) 원고는 위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B와 D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차전136935 지급명령을 받았다.